

(參 照)

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의안
번호

997

2000. 10. 31.

1. 제안이유

- 본 조례의 개정은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 (2000. 10. 18)의 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가 일부 조정됨으로써
- 해당 상임위원회를 조정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본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중 “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”과 “성남시 농수산물유통사업소”를 삭제하고 “성남시디자인지원사업소”를 삽입하는 것 임.

3. 검토의견

- “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”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에 공백이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타당하고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.